

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

제정 2020. 3. 2 조례 제3180호

제1조(「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」의 폐지)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한다.

제2조(「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」의 폐지)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」의 폐지)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